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주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226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3월 31일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1명)
찬 성 자 : 성중기, 송도호, 송아량,
오한아, 우형찬, 이광호,
이승미, 이영실,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의원(11명)

1.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치료등을 위한 동물병원 이용하는 횟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로 인하여 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 양상되고,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노력을 명시함.

2.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노력을 명시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시에 필요한 장비 등의 설치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문서번호 | 2021033000000020 |
|------|------------------|

미첨부 사유서 (1호)

| | |
|------------------|----------------------------------|
| 요청인 : 이은주 의원 |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
| 접수일 : 2021.03.30 | |
| 회신일 : 2021.03.30 | 내용문의 : 02-2180-7942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에 따라 진료비 계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9,9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9,900천원으로 연평균 5,9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률 미반영
 - 서울시 관내 동물병원은 2021년 3월 현재(877개)에서 이후에도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참여기관이 매해 새로 추가발생할 수도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시행 1차년도에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의 수가 597개소(’21.3월 기준)임을 감안할 경우 절반수준인 299개소의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
 - ※ 참여기관의 수는 추정이 어려우나, 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경기 동물병원 50개소를 조사한 결과 (2019) 18%가 진료비용 게시증임을 감안하여 가정하였고, 추후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
 - 반려동물 진료비 계시에 필요한 표시장비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현 조례안에서는 종류와 소재 등이 제시되지 않아 지원단가를 정하기 어려워, 개소당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 2020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용 자율표시제 시범실시중인 경남 창원외의 설치비용부터 기존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개별 동물병원의 사례, 나라장터 내 검색가능한 표지판 가격, 각종 인증 현판 제작비용 등을 참고하여 10만원으로 가정

○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 연도 | | | | | 합계 |
|--------------|------------------------------|--------|-------|-------|-------|-------|--------|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 (a) | - | - | - | - | - | - |
| 세출 | 표시장비 설치 비용 지원 비용(조례안 제4조) | 29,900 | - | - | - | - | 29,900 |
| | 소계 (b) | 29,900 | - | - | - | - | 29,900 |
| □ 총 비용 (b-a) | | 29,900 | - | - | - | - | 29,900 |

○ 표시장비 설치 비용 지원 비용 ≙ 29,900천원

- 표시장비 설치 비용 지원 비용
- = 지원단가 × 지원대상
- = 100,000원 × 299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